

『구미시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: 2009년 5월 4일

나. 발 의 자 : 김상조, 권기만, 길윤옥, 김익수
박광석, 박교상, 박순이, 임춘구
장세만, 전인철, 정근수 (11명)

다. 회부일자 : 2009년 5월 6일

라. 상정일자 : 2009년 5월 18일

제14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김 상 조 의원

나. 제안이유

- 대한민국의 튼튼한 경제발전의 기반을 다지고 새마을운동을 중흥시킨
주역도시로서의 상징성을 드높이고
- 민간자율운동인 새마을운동을 지원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
발전시키고 시정발전을 도모하는데 기여하고자 함

다. 주요내용

- “새마을운동조직” 과 “새마을사업”에 대한 용어의 정의에 대해 규정함 (안 제2조)
- 예산의 범위안에서 새마을조직 육성에 필요한 사업 및 행사 등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코자 함 (안 제3조)
- 새마을운동조직 구성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등에 대비코자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함(안 제4조)

라. 참고사항

- 새마을조직육성법 제3조
- 지방자치법 제22조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배 정 미

○ 본 조례안은

-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·봉사하는 새마을운동 조직과 새마을 사업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 하고자 하는 것임

○ 주요 제정내용은

- 조례는 총 6조로 규정하면서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, 정의를 규정하고
- 안 제3조 새마을운동 조직운영, 새마을사업추진, 새마을운동 구성원의 능력배양을 위한 교육 및 연수, 기타 새마을조직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및 행사 등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 하였음

- 안 제4조 새마을운동조직 구성원이 자원봉사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규정을 명시함
- 안 제5조 보조금의 지원절차 및 관리, 결산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“구미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” 및 “구미시 보조금 관리조례”의 관계규정을 준용토록 함

○ 검토결과

-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·봉사하고 있는 새마을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 함으로써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여 시정 발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
- 새마을 운동 조직이 지역사회를 위해 희생적인 봉사활동을 하고 있고, 이 조례 제정을 계기로 지역 선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새마을 구성원들의 사기진작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
- 타 단체에서 본 조례 제정을 계기로 보험가입 등 동일한 요구를 할 경우, 형평성 등의 문제점은 없는지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됨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수정가결